

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 (제20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원양어업 행정처분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(이하 “행정처분등”이라 한다)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등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등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등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등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등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적용하고,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원양산업발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행정처분등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거나 해기사면허의 취소요구를 할 수 있다.
- 라.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외국에 억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그 억류기간을 감경한다.
- 마. 관할 행정기관은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2년간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산일수가 180일을 초과한 어선이 다시 원양산업발전법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- 바.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4항에 따른 계류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어선의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, 해당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관련조항	행정처분등의 기준					
		원양어업허가			해기사면허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	법 제11조 제1항제1호	취소					
나.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위반한 때	법 제11조 제1항제2호, 이 규칙 제15조의2	정지 30일	정지 45일	정지 60일			
다.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때	법 제11조 제1항제2호, 이 규칙 제12조	정지 60일	정지 120일	취소			
라.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	법 제11조	경고	정지	정지			

가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때	제1항제2호, 이 규칙 제13 조		10일	15일			
마.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가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업신고 를 하지 않은 때	법 제11조 제1항제2호, 이 규칙 제19 조	경고	취소				
바.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제 외한 그 밖의 원양어업허 가 내용을 위반한 때	법 제11조 제1항제2호	정지 30일	정지 60일	취소	정지 30일	정지 60일	취소
사. 원양어업자가 법 제8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(법인의 경우 6개월 이 내에 임원을 변경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)	법 제11조 제1항제3호	취소					
아.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만 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 당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	법 제11조 제1항제4호	경고	취소				
자.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가 2년을 초과하여 휴업 한 때	법 제11조 제1항제4호	경고	취소				
차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 양어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때	법 제11조 제1항제4호	경고	정지 10일	정지 15일			
카. 법 제13조제2항 각 호 (제9호 및 제17호는 제 외한다)의 중대한 위반행 위를 한 때	법 제11조 제1항제5호	정지 60일	정지 120일	취소	정지 60일	정지 120일	취소
타. 법 제13조제2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	법 제11조 제1항제5호						

1) 조업상황·어획실적·양륙량·전재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		정지 60일	정지 120일	취소	정지 60일	정지 120일	취소
2) 전재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재를 한 때		정지 60일	정지 120일	취소	정지 60일	정지 120일	취소
파. 법 13조제2항제1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	법 제11조 제1항제5호	정지 60일	정지 120일	취소	정지 60일	정지 120일	취소
하.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무선통신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어선의 위치를 보고하지 않은 때	법 제11조 제1항제5호, 이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	정지 30일	정지 60일	정지 90일	정지 30일	정지 60일	정지 90일